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

이 형 근

경찰수사연수원

조 은 경[†]

동국대학교

이 미 선

동양대학교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제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리,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주요어 : 심증, 피의자신문, 조서왜곡, 조작, 생략

* 본 연구는 이형근(2016)의 박사학위 논문 제3장의 연구 1을 재구성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준칙 제정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재해석한 것임.

† 교신저자 :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E-mail: ekjo@dongguk.edu

범죄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따라서 진술증거의 수집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업무의 80% 이상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할애되고 있어 진술증거의 중요성이 더 크다(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석, 2014, p. 362).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라는 서면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조서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신동운, 2014, pp. 1158-1159). 또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는 영상녹화제도, 수사과정기록제도 등을 도입하여 조서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제244조의2, 제244조의4).

그런데 조서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상의 각종 장치에도 불구하고 수사실무에서는 조서 왜곡의 문제가 근절되지 못했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이형근, 조은경, 2014). 이에 따라 조서제도의 근원적 개선 또는 폐지는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되었으며(김현숙, 2008, pp. 51-61; 이형근, 2019),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공히 ‘피고인 등의 내용인정’이라는 요건 하에서만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제312조). 그러나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조서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나 약식절차 등에 있어서

는 내용인정이라는 통제장치가 작동될 수 없으며, 피고인 등이 내용부인을 하더라도 당해 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서작성 국면의 적정화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이형근, 2020a, pp. 4-5).

한편, 조서제도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법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권영법, 2012; 박노섭, 2004a, 2004b, 2007; 이종엽, 2010; 조정래, 2011), 비교적 최근에는 심리학계에서도 조서제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이형근, 백윤석, 2019; 이형근, 조은경, 2014). 다만, 이들 연구는 연구방법론상의 제약(인식조사, 사례연구 등)으로 인해 조서 왜곡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조서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진술증거 수집·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Coulthard, 2002; Gregory, Compo, Vertefeuille, & Zambruski, 2011; Komter, 2006; Lamb, Orbach, Sternberg, Hershkowitz, & Horowitz, 2000; van Charldorp, 2012)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조서 왜곡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서제도 개선 논의에 올바른 논거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결과를 검증·일반화하려면 조서 왜곡 문제에 관한 연구를 보다 다양한 방법론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들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한다.

관련 법제의 개관

우리나라의 진술증거제도는 진술의 청취, 기록 및 평가라는 세 국면으로 구성되며(이형

근, 2019), 각 국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제242조,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4, 제312조 등).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진술증거제도의 중심에는 조서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형근, 2020a, p. 1).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물에 증거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312조 제2항, 제318조의2 제2항). 연혁적으로 조서제도의 적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는 크게 기록 국면에 관한 개선 조치와 평가 국면에 관한 개선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양자 모두에 초점을 두었다면,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후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형근, 2019).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자격으로 설정하고(제312조 제1항;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불인정 시에는 영상녹화물 등으로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31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는 “조서의 퇴출에서 조서의 생활으로”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나라의 진술증거제도에 있어 큰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조국, 2008). 한편,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서 ‘생활’의 조건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제243조의3), 영상녹화제도(제244조의2), 수사과정기록제도(제244조의4)를 도입하고, 권리고지의 구체화(제244조의3)를 단행하는 등 기록 국면의 개선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발생한

세칭 ‘오산시장 놈풀수수 사건(검찰 사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309동 성폭행 사건(경찰 사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에서의 조서 왜곡 사례는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여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한 내용인정’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공통된 증거 자격으로 설정하였다(제312조 제1항, 제3항; 2019. 4. 26. 의안 20030호 등).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한결 용이해질 것임은 분명하나, 피의자신문조서가 활용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이형근, 2020a, pp. 3-6). 가령, 형사소송법 상 영장실질심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등이 내용부인을 하더라도 당해 조서가 구속 여부 판단에 사용될 수 있고(제201조의2 제7항), 약식절차는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 내용부인을 할 기회 자체가 없다(제448조 제1항). 또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 등이 내용부인을 하더라도 당해 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제318조의2 제1항),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를 진술증거제도 개선의 완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서면기록의 왜곡

이형근과 조은경(2014)은 우리나라의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사례 10건의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비교·분석하여 조서 왜곡의 ‘정도’와 ‘유형’을 고찰하였다. 먼저,

왜곡 정도를 분석하여,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양적 차이가 80%에 달한다는 사실, 조서에 쪽 당 4건 정도의 왜곡이 있다는 사실,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왜곡이 평균 79%에 달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왜곡 유형을 분석하여, 조서에 문답전환(34%), 문답 생략(33%), 답변의 미묘한 조작(14%), 답변생략(7%), 질문조작(6%), 문답추가(5%), 답변의 뚜렷한 조작(1% 미만) 등의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서의 왜곡 유형을 생략과 조작으로 대별하였다. 한편, 이형근과 백윤석(2019)은 이상의 왜곡 유형 등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조서의 왜곡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등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 뿐만 아니라 증거로서의 가치(증명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면기록 왜곡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다른 진술증거제도(법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Coulthard(2002)는 영국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용의자신문 사례 3건의 축어적 기록(verbatim)과 공식적 진술보고서(report)를 비교·분석하여, 진술보고서에 용의자를 설득하는 대화 부분을 각색하거나 생략하는 ‘설득적 대화의 왜곡’, 용의자에게 공범의 자백이나 범행의 세부 등을 알려주는 대화 부분을 각색하거나 생략하는 ‘단서 제시 대화의 왜곡’, 용의자의 진술 중 혐의 입증에 방해되는 부분을 생략하는 ‘대화의 생략’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van Charldorp(2012)는 네덜란드의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용의자신문 사례 15건의 영상녹화물과 진술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기초적인 질문과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녹화물과 진술보고서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 사건

에 관한 질문과 답변 부분 있어서는 영상녹화물과 진술보고서 간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수사관은 주로 끼어들기, 발언권 독점하기, 용의자의 진술 무시하기 등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서면기록의 왜곡은 용의자에 대한 신문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Gregory, et al., 2011; Lamb, et al., 2000). 특히, 피해자조사에 관한 영상녹화물과 축어적 기록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서면기록의 본질적 취약성을 엿볼 수 있다(Lamb, et al., 2000). 서면기록의 왜곡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것이든 다른 수사대상자의 진술에 관한 것이든, 그 형태가 조서이든 보고서이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에 관한 서면기록에는 ‘질문’ 또는 ‘답변’의 ‘조작(각색)’ 또는 ‘생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곡의 원인

이와 같은 본질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공히 서면을 진술기록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영상녹화물 등 전자적 기록을 통해 진술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판정이 자칫 영상녹화물 시청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하였을 것이다(조국, 2008; 서보학, 2008). 그렇다면, 조서라는 진술기록 매체를 상수로 두고, 조서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진단하여 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는 서면화의 방식(박노섭, 2004a; 엄명용, 2004, pp. 71-73; Komter, 2006), 신문 전 증거 접촉을 통해 형성

된 수사관의 심증(박노섭, 2004a; 조정래, 2011; Leo & Davis, 2010; Meissner & Kassin, 2004),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부족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도록 만드는 수사업무의 특성, 업무량, 예산 및 내외부적 압력(박노섭, 2004a; 이 윤; 2015, p. 3; Leo & Davis, 2010; Meissner & Kassin, 2004) 등을 진술증거 왜곡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요인들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선행연구에 한정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조정래(2011)는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은 자신의 심증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주요 사실 이외의 주변적 내용은 조서에서 충분히 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서가 형사절차에서 많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되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박노섭(2004a)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서에 기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리 사건에 관한 일정한 그림을 머리 속에 그린 후 진술이 자신의 그림과 일치하면 진술을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고 진술이 자신의 그림과 일치하지 않으면 진술을 수정 또는 생략하여 조서에 기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관의 머리 속에 모순되는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견해를 재구성하여 조서에 기재한다고 설명하였다.

Leo와 Davis(2010)는 수사절차에서의 편향이 후속 형사절차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가령, 특정한 대상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다른 대상은 배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터널시야(tunnel vision)’, 자신의 신념과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탐색, 생산,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 bias)’, 자신의 목적에 따라 특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탐색, 처리,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동기적 편향(motivational bias)’ 등을 주된 심리적 요인으로 보았다. Meissner와 Kassin(2004)은 수사관이 신문을 통해 용의자의 진실성 또는 유무죄를 판단하려는 경향, 즉 심증에서 진술증거의 왜곡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편향이 갖는 악영향은 사례연구(Ofshe & Leo, 1998; Drizin & Leo, 2004), 실험연구(Kassin & Fong, 1999; Kassin, Goldstein, & Savitsky, 2003; Meissner & Kassin, 2002), 문헌연구(Ofshe & Leo, 1997a, 1997b) 등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모의 신문의 처리

이상에서 조서제도, 심증, 양자의 관계 등 본 연구의 내용적 토대가 될 선행연구 등을 개관해 보았다. 본 연구는 ‘수사관의 심증’ 및 ‘신문상황’을 처리 및 연출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이에 관한 방법론적 토대가 될 선행연구 등도 개관해 보고자 한다. 장민환(2014)은 증거의 종류와 증거의 탄력성이 수사관의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에 관한 서술을 달리하는 4종류의 수사기록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의 종류와 증거의 탄력성을 처리하였다(pp. 26-32). 고민조와 박주용(2019)은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에 관한 서술을 달리하는 3

종류의 판결문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처치하였다. 따라서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술을 달리하는 수사기록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열람하게 한다면 서로 다른 심증을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에 실험환경 하에서의 신문상황 연출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의상황(저위험 상황: low stake)으로는 실제상황(고위험 상황: high stake)과 같은 수준의 동기, 정서, 인지 상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환경 하에서도 신문상황 연출이 가능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Caso, Gnisci, Vrij, & Mann, 2005; Granhag & Strömwall, 2002; Hartwig, 2005; Hartwig, Granhag, Strömwall, & Kronkvist, 2006; Strömwall, Hartwig, & Granhag, 2006; Vrij, Edward, & Bull, 2001; Vrij & Mann, 2006; Vrij, Mann, & Fisher, 2006; Vrij, Mann, Fisher, Leal, Milne, & Bull, 2008; Vrij, Semin, & Bull, 1996; White & Burgoon, 2001). 가령, Vrij 등(2008)은 역순회상 지시의 거짓탐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의 신문상황을 연출한 바 있고, Hartwig(2005)은 전략적 증거사용의 거짓탐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의 신문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수사기록 등으로 신문할 혐의사실의 요지를 제시하고, 서면화할 진술 및 도구를 제공한다면 조서작성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들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확인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서로 다른 심증을 처치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차이를 비교·분석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수사관의 유죄심증은 조서의 왜곡을 야기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사관의 심증이 증거의 취사 또는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고(박노섭, 2004a; 조정래, 2011; Leo & Davis, 2010; Meissner & Kassin, 2004), 조서작성은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므로 여기에도 수사관의 심증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많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이형근·조은경, 2014), 여기에는 열람자에 의한 정정실패나 지휘자에 의한 통제실패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왜곡 경향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때문이다. 즉, 수사관에게는 조작 형태의 왜곡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서의 왜곡은 주변적 정황보다 범행의 핵심에 관한 부분에서 더 많을 것이다. 주요 사실 이외에 주변적 내용을 생략할 가능성을 제기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조정래, 2011), 피의자신문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2조), 단순한 누락을 제외한 생략, 즉 왜곡에 해당하는 생략 및 조작은 주변적 정황보다 범행의 핵심에 관한 부분에서 더 많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

연구대상

총 90명의 경찰수사관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전문교육 중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보상 계획(연구결과 및 개인별 유의사항 피드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한 교육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77명(85.6%), 여성 이 13명(14.4%)이었고, 연령은 20대가 4명 (4.4%), 30대가 41명(45.6%), 40대가 38명 (42.2%), 50대 이상이 7명(7.8%)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수사경력은 7.23년(표준편차 = 7.028)이었고, 현 소속 부서는 수사과가 11명(12.2%), 형사과가 67명(74.4%), 여성청소년과 등 기타 부서가 12명(13.3%)이었으며, 최장기 근무 부서는 수사과가 14명(15.6%), 형사과가 64명 (71.1%), 여성청소년과 등 기타 부서가 12명 (13.3%)이었다.

연구방법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총 90명의 참여자를 저협의 수사기록을 보는 조건(무죄 심증 집단),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조건(중립 심증 집단), 고협의 수사기록을 보는 조건(유죄심증 집단)에 각각 30명씩 무선표로 할당하고, 동일한 신문 영상녹화물을 시청하면서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한 후, 작성된 조서 상 왜곡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HIRB-2015-022)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재료에 설정된 사건개요와 수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5. 8. 5. 12:30경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00 소재 ‘풍경이 있는 꽃집’에 들어가 피해자 나피해(35세, 여)가 계산대 아래에 놓아 둔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상 사건개요). 사건 당일 오전 용의자 김길동이 꽃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 나피해는 용의자 김길동이 꽃집을 나간 후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100만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산대에서는 지문 7점이 발견되었다(이상 수사사항).

수사기록

수사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록된 수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무죄심증 집단에 제공할 저협의 수사기록과 유죄심증 집단에 제공할 고협의 수사기록 두 가지를 제작하였다. 두 가지 수사기록은 ‘동일한’ 수사사항에 대해 ‘상이한’ 수사결과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였다. 첫째, ‘당일 상황’에 관하여 꽃집에 방문한 손님의 수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현금이 있음을 확인한 시점을 상이하게 처리하여 서로 다른 심증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둘째, ‘행적수사’에 관하여 꽃집에 방문하기 전 용의자의 출근 사실과 점심 식사 사실을 달리 처리하여 서로 다른 심증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셋째, ‘전과확인’에 관하여 절도 관련 동종 전과를 달리 처리하여 서로 다른 심증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넷째, ‘지문감정’에 관하여 꽃집 계산대에서 채취한 지문을 감정 불능 상황과 용의자의 것인 상황으로 달리 처리하여 서로 다른 심증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표 1. 수사기록 상 처치 비교

수사기록	저 협의	고 협의
당일상황	20명의 손님 방문 10:00 현금 확인	2명의 손님 방문 12:00 현금 확인
행적수사	출근 확인 접심식사 진실	출근 미확인 접심식사 거짓
전과확인	예비군법위반 1건	절도 등 3건
지문감정	5점, 피해자의 것 2점, 감정불능	5점, 피해자의 것 2점, 용의자의 것

(표 1 참고).

한편,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중립심증 집단에 제공할 국어 맞춤법 문제를 제작하였다. 문제는 ‘○○국어 문법편’에서 띄어쓰기 5문항과 외래어 표기법 5문항을 발췌하여 제작하였고, 10회의 리허설을 거쳐 난이도를 수사기록 검토 시간인 5분 동안 풀기에 적합하도록 설정하였다. 문제지의 뒷부분에는 정답과 해설을 수록하였다.

측정지

무죄심증 및 유죄심증 집단의 사건에 대한 이해 및 심증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지를 제작하였다. 문항은 수사기록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것 5문항, 피의자의 협의에 관한 것 1문항, 참여자에 관한 것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사기록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항은 용의자의 직업, 범행시각, 범행장소, 피해품의 금액, 채취된 지문의 개수 등에 대한 4지선다형으로 설계하였다. 피의자의 협의에 관한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범인일 가능성 낮음, 4점: 알 수 없음, 7점: 범인일 가능성 높음)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수사경력, 현 소속 부서, 최장기 근무 부서 등에 관한 질문

으로 구성하였다. 중립심증 집단은 심증 형성을 위한 처치, 즉 수사기록 검토를 하지 않으므로 중립심증 집단용 측정지에는 참여자에 관한 질문 6문항만 수록하였다.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은 모든 참여자가 신문참여에 갈음하여 시청한 연구재료다. 영상녹화물은 신문 시나리오를 설계한 후 이에 따라 신문 장면을 녹화하여 9분 40초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먼저, 신문 시나리오는 권리고지 등에 관한 도입 문답 4쌍, 범죄사실 등 관한 본 문답 10쌍, 진술내용의 동일성 등에 관한 마무리 문답 2쌍으로 구성하였다. 본 문답 10쌍은 ① 꽃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꽃집에 간 일자, ③ 꽃집에 간 시각, ④ 용의자의 사무실에서 꽃집까지의 거리, ⑤ 꽃집에 간 사유, ⑥ 꽃집에서 용의자가 한 행동, ⑦ 계산대 쪽으로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⑧ 계산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⑨ 꽃집을 둘러본 부분의 세부, ⑩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10가지로 구성하였다.

각 문답의 답변 부분에는 기본적 답변, 부가적 답변, 무관련 답변을 섞어 넣었다. 기본적 답변은 ‘질문과 직접 연관된 답변으로 협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이고, 부가적 답변은 ‘질문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이며, 무관련 답변은 ‘질문과 직접 연관된 것도 아니고 협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답변’이다. 실제 신문에서 피의자는 수사관의 질문과 관련된 답변도 하고 관련 없는 답변도 하며, 협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도 하고 영향 없는 답변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답변 부분에 다양한 종류의 답변을 섞어 넣은 것이다(그림 1)

참고).

그림 1에서 “예. 꽃 구경을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을 겁니다.”(진하게)는 기본적 답변이다. 꽃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 답변이면서 지문이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와 결합될 경우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이웃지간이라 왕래가 있던 관계거든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동네 상가들을 잘 둘러보는 편이예요.”(기울임)는 부가적 답변이다. 질문과 직접 연관된 답변은 아니지만 범행과 무관하게 용의자가 꽃집에 방문하여 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사람을 돈 훔친 범죄자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뭐 증거라도 가지고 사람을 조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보통) 등은 무관련 답변이다. 질문과 직접 연관된 답변도 아닐뿐더러 불만을 토로 하는 내용이어서 혐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기

문: 김길동씨. 풍경이 있는 꽃집에 간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꽃 구경을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을 겁니다^a. 그런데요.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사람을 돈 훔친 범죄자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b. 평소에도 이웃지간이라 왕래가 있던 관계거든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동네 상가들을 잘 둘러보는 편이예요^c. 그런데요. 뭐 증거라도 가지고 사람을 조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긴 형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문제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림 1. 신문 시나리오 중 ①번 문답. a진하게 된 부분은 기본적 답변임. b보통 모양으로 된 부분은 무관련 답변임. c기울임 된 부분은 부가적 답변임.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만들어진 신문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모의 신문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영상녹화시스템으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영상녹화물은 제작하였다. 모의 신문상황은 수사관 역할 및 피의자 역할의 연구 협조자 두 명에 의해 연출되었으며, 녹화는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에서 사용 중인 영상녹화시스템과 동일한 △△社의 영상녹화시스템으로 하였다. 녹화영상의 화각은 수사관 역과 피의자 역 모두를 비추는 것과 피의자 역만 비추는 것 두 가지로 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절차는 참여자 안내, 수사기록 검토 또는 국어 맞춤법 문제 풀기, 측정 및 설문, 조서작성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자 안내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 취지 설명, 참여 동의서 작성, 유의점 설명 등을 5분간 진행하였다. 한편, 무죄심증 및 유죄심증 집단에게는 측정지 중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참여자가 갖게 된 주관적 판단에 부합하는 수치(1점~7점)를 선택하면 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둘째, 수사기록 검토 또는 국어 맞춤법 문제 풀기 단계에서는 무죄심증 및 유죄심증 집단에게는 수사기록을 5분간 검토하도록 하였고, 중립심증 집단에게는 국어 맞춤법 문제를 5분간 풀도록 하였다. 셋째, 측정 및 설문 단계에서는 무죄심증 및 유죄심증 집단에게는 이해, 혐의, 참여자 등 모든 문항에 5분간 응답하도록 하였고, 중립심증 집단에게는 참여자에 관한 문항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넷째, 조서작성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들

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을 시청하면서 영상녹화물 상의 신문사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은 공히 25분을 부여했다. 영상녹화물은 △△社의 영상녹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용 재생기로 재생하였고, 원활한 조서작성이 되도록 16쌍의 문답을 12회로 나누어 재생해 주었다. 분할재생은 도입 문답 4쌍을 이어서 재생한 후 정지하고, 본 문답 10쌍을 각각 재생한 후 정지하기를 10회 반복하고, 마무리 문답 2쌍을 이어서 재생한 후 정지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조서의 작성 및 제출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록된 피의자신문조서 서식에 영상녹화물 상의 신문사항을 기재한 후, 완성된 조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코딩절차

실험절차에서 얻은 90건의 조서에서 조작 및 생략의 왜곡을 코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본 문답 10쌍(①번~⑩번)만 코딩 대상으로 한다. 둘째, 답변 중 기본적 답변과 부가적 답변에 발생한 왜곡만 코딩한다. 셋째, 왜곡을 조작과 생략 두 가지로 대별하여 코딩한다. 넷째, 한 쌍의 문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작의 유무와 생략의 유무를 각각 코딩한다. 다섯째, 왜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왜곡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딩한다. 즉 경계성 왜곡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 거증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왜곡으로 간주한다. 여섯째, 각 문답 쌍의 조작 유무와 생략 유무를 코딩 테이블에 0(없음) 또는 1(있음)로 기록한다. 일곱째, 각 문답 쌍의 조작 또는 생략 점수를 합산하여 조작 또는 생략 점수를 산출하고, 조작 점수와 생략 점수를 합산하여 왜

곡 총점을 산출한다.

코딩은 코딩기준 등을 학습한 두 명의 코더, 즉 연구자 및 연구 협조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학습은 ‘진술기록의 오류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강의 수강 3시간, ‘코딩 기준’ 공동설계 및 숙지 3시간, ‘조서와 영상을 대비하는 내 사건 분석 과목’ 공동지도 6시간, ‘조서작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조서’를 활용한 코딩 연습 10회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코딩은 20%에 해당하는 18개의 표본에 대한 복수(교차) 코딩, 평가자 간 일치도 확인, 80%에 해당하는 72개의 표본에 대한 단독 코딩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에서 각각 6개씩 총 18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두 명의 코더가 복수 코딩을 하였다. 코더 1과 코더 2가 코딩한 표본별 왜곡 총점에 대하여 평가자 간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ICC = .985, p < .001$. 다음으로, 나머지 72개의 표본은 코더 1과 코더 2가 36개씩 단독으로 코딩하였다.

결과

처치검증

조서작성에 앞서 저혐의 수사기록을 읽은 집단과 고혐의 수사기록을 읽은 집단이 수사기록의 유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심증을 달리 형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저혐의 수사기록을 읽은 집단의 심증점수 평균은 2.800(표준편차 = 1.157, 최소값 = 1, 최대값 = 4), 고혐의 수사기록을 읽은 집단의 심증점수 평균은 6.067

(표준편차 = .785, 최소값 = 5, 최대값 = 7)로 조서작성에 앞서 참여자들이 검토한 수사기록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심증이 잘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t(58) = -12.800$, $p < .001$, $d = -3.304$. 따라서 이후의 분석절차에서는 수사기록의 유형(저협의·없음·고협의)을 심증의 유형(무죄·중립·유죄)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증에 따른 왜곡의 빈도

수사관 참여자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심증 집단은 평균 0.8회(표준편차 = .925) 가량의 조작과 4회(표준편차 = 2.133) 가량의 생략을 하는 것으로, 무죄심증 집단은 평균 0.1회(표준편차 = .183) 가량의 조작과 1.7회(표준편차 = 1.507) 가량의 생략을 하는 것으로, 중립심증 집단은 0.07회(표준편차 = .254) 가량의 조작과 1.7회(표준편차 = 1.258) 가량의 생략을 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다(표 2 참고).

조서의 왜곡점수에 대해 수사관 참여자의

심증이 갖는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Wilks' Lamda = .543, $F(4, 172) = 15.358$, $p < .001$, $\eta^2 = .263$. 이러한 효과는 왜곡의 하위 유형인 조작과 생략을 개별적으로 검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서의 조작점수에 대해 수사관 참여자의 심증은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87) = 17.736$, $p < .001$, $\eta^2 = .290$. 조서의 생략점수에 대해서도 수사관 참여자의 심증은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87) = 18.339$, $p < .001$, $\eta^2 = .297$. Bonferroni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바, 유죄심증 집단(평균 = .800, 표준편차 = .925)은 무죄심증 집단(평균 = .033, 표준편차 = .183)이나 중립심증 집단(평균 = .067, 평균 = .254)보다 더 많은 조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죄심증 집단(평균 = 4.00, 표준편차 = 2.133)은 무죄심증 집단(평균 = 1.733, 표준편차 = 1.507)이나 중립심증 집단(평균 = 1.733, 표준편차 = 1.258)보다 더 많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죄심증 집단과 중립심증 집단 간에는 조작과 생략 모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2의 주 참고).

표 2. 수사관 참여자의 심증에 따른 왜곡점수 평균

심 증	<i>n</i>	조 작		생 략		총 계
		<i>M</i> (<i>SD</i>)	95% CI	<i>M</i> (<i>SD</i>)	95% CI	
무 죄	30	.033 (.183) ^b	[-.171, .238]	1.733 (1.507) ^{ab}	[1.126, 2.341]	1.767 (1.478)
중 립	30	.067 (.254) ^a	[-.138, .271]	1.733 (1.258) ^a	[1.126, 2.341]	1.800 (1.243)
유 죄	30	.800 (.925) ^c	[.595, 1.005]	4.000 (2.133) ^c	[3.393, 4.607]	4.800 (2.355)
총 계	90	.300 (.661)	-	2.489 (1.973)	-	2.789 (2.251)

주. Bonferroni에 의한 사후분석 실시. 서로 다른 위첨자가 표시된 집단 간에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신문사향 등에 따른 왜곡의 빈도

신문 시나리오 상의 문답을 상대적으로 ‘주변적 정황’에 관한 문답으로 볼 수 있는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문답과 상대적으로 ‘범행의 핵심’에 관한 문답으로 볼 수 있는 ⑥번부터 ⑩번까지의 문답으로 구분한 후, 신문사향(핵심·주변)에 따라 조서 왜곡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유죄심증 및 무죄심증 집단 각각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심증 집단의 경우 조작은 주변적 신문사향(평균 = .133, 표준편차 = .434)보다 핵심적 신문사향(평균 = .700, 표준편차 = .661)에 더 많이 하고, $t(29) = -4.649, p < .001, d = -.971$; 생략은 핵심적 신문사향(평균 = 1.867, 표준편차 = 1.093)보다 주변적 신문사향(평균 = 2.333, 표준편차 = 1.348)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9) = 3.010, p = .005, d = -0.380$ (그림 2(a) 참고). 반면, 무죄심증 집단의 경우 조작은 핵심적 신문사향(평균 = .000, 표준편차 = .000)

과 주변적 신문사향(평균 = .033, 표준편차 = .183)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t(29) = 1.000, p = .326, d = .257$; 생략은 핵심적 신문사향(평균 = .533, 표준편차 = .681)보다 주변적 신문사향(평균 = 1.200, 표준편차 = 1.126)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9) = 3.254, p = .003, d = -.717$ (그림 2(b) 참고).

한편, 성별, 연령, 수사경력, 현 소속 부서, 죄장기 근무 부서 등 수사관 참여자의 개인차 변인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연령 이외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바, 조작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나, $F(3, 86) = 1.713, p = .170, \eta^2 = .056$; 생략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F(3, 86) = 2.916, p = .039, \eta^2 = .092$. 다만, 연령의 조건별 분포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바, 연령이 각 집단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6, N = 90) = 4.101, p =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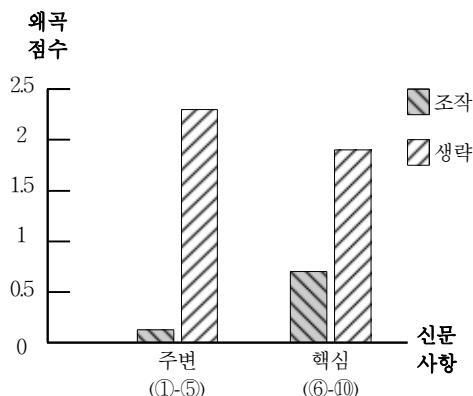


그림 2(a). 신문사향에 따른 유죄심증 집단의 조작점수 및 생략점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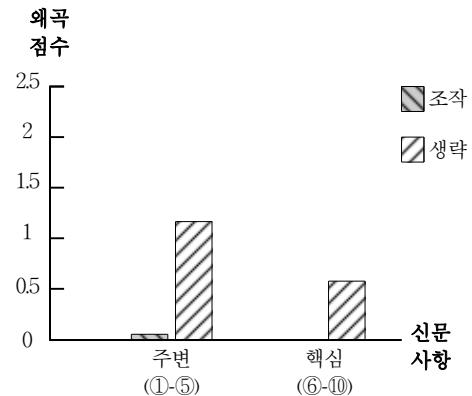


그림 2(b). 신문사향에 따른 무죄심증 집단의 조작점수 및 생략점수 평균

논 의

범죄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서 진술증거는 범죄사실과 정상의 적정한 판단에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 상 진술증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 진술자에 의해 ‘구두’로 법원에 ‘직접’ 보고되는 것이 원칙이다(제310조의2: 전문법칙).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의 조화를 고려하여 직접 보고 원칙에 대한 예외(제316조 등: 전문진술)와 구두 및 직접 보고 원칙 모두에 대한 예외(제312조 등: 전문서류)를 허용하고 있다(신동운, 2014, pp. 1133-1134). 따라서 수사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서’는 전문서류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증거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예외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송경제에 이바지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수사실무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조서의 왜곡이 상존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이형근, 조은경, 2014). 한편, 서면화의 방식(박노섭, 2004a; 엄명용, 2004, pp. 71-73), 수사관의 심증(박노섭, 2004a; 조정래, 2011), 수사환경(박노섭, 2004a; 이 윤, 2015, p. 3) 등이 조서 왜곡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들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실험연구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죄심증은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에 비해 더 많은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수사관은 자신의 심증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설명(조정래, 2011), 수사관은 미리 사건에 관한 일정한 그림을 머리 속에 그린 후 상대방의 진술과 머리 속의 그림을 비교하여 진술을 수정 또는 생략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설명(박노섭, 2004a) 등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무죄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진술증거의 왜곡은 증거를 취사하고자 하는 동기적 편향이 있을 때 발생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설명(Leo & Davis, 2010)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떤 수사관에게 유죄심증이 없다면 -무죄심증을 가졌든 심증 자체가 없든- 자신의 신념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취사할 동기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굳이 조서를 왜곡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조서에는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의 왜곡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선행 사례연구(이형근, 조은경, 2014)의 결과를 일반화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행 사례연구에서는 생략이 조작에 비해 약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이형근, 조은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조작의 평균이 0.3회, 생략의 평균이 2.5회로 조작보다 생략이 약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통해 양자의 빈도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결과는 조서의 왜곡 과정에 부작위 편향(omission bias), 즉 ‘동일한 해악을 적극적 작위에 의해 야기하는 경우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 야기하는 경우에 도덕적 죄책감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현상(Spranca, Minsk, & Baron, 1991)’이 작용할 여지를 시사해 준다.

즉, 수사관이 자신의 심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할 때, 부작위 편향이 작용하여, 적극적으로 내용을 조작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내용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문사항(핵심·주변)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기초적 문답 부분보다 사건에 관한 문답 부분에서 서면기록의 왜곡이 더 빈번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van Charldorp, 2012)와 주변적 내용은 조서에서 쉽게 누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설명(조정래, 2011)을 동시에 뒷받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유죄심증 집단의 경우 주변적 신문사항보다 핵심적 신문사항에서 더 많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은 전자의 설명을, 유죄심증 및 무죄심증 집단 모두 핵심적 신문사항보다 주변적 신문사항에서 더 많은 생략을 한다는 사실은 후자의 설명을 각각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신문사항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모의 신문상황 하에서 조서의 왜곡 현상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의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수사관의 심증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각종 연구(예: 심증 → 현장 증거 수집, 심증 → 강제수사의 빈도, 심증 → 라포 형성의 정도 등)의 수행에 적용 가능한 심증 처치 예시를 제공한 점,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조서 왜곡을 연구주제로 하는 각종 연구(예: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왜곡 정도 비교,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평가 등)의 수행에 적용 가능한 코딩 예시를 제공한 점 등에 있어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제약이 병존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을 시청하면서 영상녹화물 상의 신문사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규범적·현실적 측면에서의 타당도를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모의 신문상황 하에서 참여자들이 신문에 ‘참여(시청)’하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는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및 수사관행에 의하면 ‘신문’을 하는 수사관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신문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있고(김인희, 2018, p. 102; 신동운, 2014, p. 267-268), 수사실무에서도 참여자에 의한 조서 작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이형근, 2020a, p. 40).

다음으로, 영상녹화물 상의 신문사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제로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조서를 작성하는 상황과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들이 피의자의 답변에 반응하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없으며, 조서 작성에 있어 시간적 탄력성도 없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참여자들이 각자의 신문기법이나 조서작성 습관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주었을 것이다. 선행연구가 조서의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문기법과 조서작성 관행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박노섭, 2004a; 이형근, 조은경, 2014), 신문기법과 조서작성 습관이 온전히 구현되기 어려운 모의 신문상황 하에서의 연구결과는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예: 이형근, 조은경, 2014와 본 연구 간 왜곡의 빈도 차이, 조작·생략의 비율 차이 등).

2020년 2월 4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한 내용인정’ 등으로 단일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문제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한결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용인정이라는 사후적 통제장치의 시간적 · 사안적 적용 범위(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내용부인 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문제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형근, 2020a, pp. 3-6).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7일 공포된 대통령령(2020. 10. 7. 제정 대통령령 제31089호)은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서의 작성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령이 수정 없이 확정될 경우 조서작성 실무는 현재와 같이 수사기관 또는 수사관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이형근, 2020b; 이형근, 2020c).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서의 왜곡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박노섭, 2004a; 엄명용, 2004. pp. 71-73; 이 윤; 2015, p. 3; 조정래, 2011). 본 연구는 현행 법제를 고려하여 조서라는 진술기록 매체를 상수로 두고, 수사관의 심증을 독립변인으로 삼아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심증이라는 요인 역시 상수에 가깝다. 가령, 확증편향은 인류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 마인드 버그 중 하나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본 연구가 상수로 설정한 조서제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였지만 조서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

니므로, 현 시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의 정비를 통해 조서의 왜곡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모쪼록 본 연구가 진술증거제도의 개선과 관련 후속연구의 수행에 미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영법 (2012).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31, 202-242.
- 고민조, 박주용 (2019). 피고인의 성격증거 (Character Evidence)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법심리학회지: 법, 10(3), 215-235.
- 김인희 (2018). 형사소송법 제2판, 서울: 피앤씨 미디어.
- 김현숙 (2008).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식 (2014). 범죄수사학. 용인: 경찰대학 출판부.
- 박노섭 (2004a). 수사절차상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16(1), 103-144.
- 박노섭 (2004b).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6, 46-70.
- 박노섭 (2007). 개정형사소송법상 조서재판위험성에 대한 소고. 경찰학연구, 7(2), 9-30.
- 서보학 (2008).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사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법발전재단 사법, 1(3), 161-195.
- 신동운 (2014). 신형사소송법 제5판. 서울: 법

- 문사.
- 엄명용 (2004).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 진술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 윤 (2015).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엽 (2010).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진술 증거의 평가방법. 저스티스, 120, 172-222.
- 이형근 (201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 조서의 작성, 정정 및 평가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근 (2019). 조서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형사정책연구소식, 149, 30-34.
- 이형근 (2020a).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근 (2020b). 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고찰: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3), 95-133.
- 이형근 (2020c). 제정 수사준칙상 조사·신문·면담 관련 조항에 관한 고찰: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2(3), 143-176.
- 이형근, 백윤석 (2019).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왜곡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19(4), 133-164.
- 이형근, 조은경 (2014).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4(2), 29-53.
- 장민환 (2014). 증거의 종류와 증거의 탄력성이 수사관의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 국 (2008).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107, 171-192.
- 조정래 (2011).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혼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36, 329-360.
- Caso, L., Gnisci, A., Vrij, A., & Mann, S. (2005). Processes underlying decep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ruth and lies when manipulating the stak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e*, 2(3), 195-202.
- Coulthard, M. (2002). Whose voice is it? Invented and concealed dialogue in written records of verbal evidence produced by the police. In J. Cotterill, (Ed.),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pp. 19-3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rizin, S. A., & Leo, R. A. (2004).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s in the post-DNA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82, 891-1007.
- Granhag, P. A., & Strömwall, L. A. (2002). Repeated interrogations: Verbal and non-verbal cues to decep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6(3), 243-257.
- Gregory, A. H., Compo, N. S., Vertefeuille, L., & Zambruski, G. (2011). A comparison of US police interviewers' notes with their subsequent report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8(2), 203-215.
- Hartwig, M. (2005). *Interrogating to detect deception and truth: Effects of strategic use of evidence*. PhD thesis, University of Gothenburg, Department of Psychology.
- Hartwig, M., Granhag, P. A., Strömwall, L., &

- Kronkvist, O. (2006). Strategic use of evidence during police interrogations: When training to detect deception work. *Law and Human Behavior*, 30, 603-619.
- Kassin, S. M., & Fong, C. T. (1999). "I'm innocent!" Effects of training on judgments of truth and deception in the interrogation room. *Law and Human Behavior*, 23, 499-516.
- Kassin, S. M., Goldstein, C. J., & Savitsky, K. (2003). Behavioral confirmation in the interrogation room: On the dangers of presuming guilt. *Law and Human Behavior*, 27, 187-203.
- Komter, M. L. (2006). From talk to text: The interactional construction of a police record.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9(3), 201-228.
- Lamb, M. E., Orbach, Y., Sternberg, K. J., Hershkowitz, I., & Horowitz, D. (2000). Accuracy of investigators' verbatim notes of their forensic interviews with alleged child abuse victims. *Law and Human Behavior*, 24(6), 699-708.
- Leo, R. A., & Davis, D. (2010).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Seven psychological processes. *The Journal of Psychiatry & Law*, 38, 9-54.
- Meissner, C. A., & Kassin, S. M. (2002). "He's guilty!": Investigator bias in judgments of truth and deception. *Law & Human Behavior*, 26, 469-480.
- Meissner, C. A., & Kassin, S. M. (2004). "You're guilty, so just confess?!" Cognitive and behavioral confirmation biases in the interrogation room. In G. D. Lassiter (Ed.), *Interrogations, confessions and entrapment* (pp. 85-106). New York: Kluwer Academic.
- Ofshe, R., & Leo, R. A. (1997a).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ce interrogation: The theory and classification of true and false confessions. *Studies in Law, Politics and Society*, 16, 189-251.
- Ofshe, R., & Leo, R. A. (1997b). The decision to confess falsely: Rational choice and irrational action.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74, 979-1122.
- Ofshe, R., & Leo, R. A. (1998). Consequences of false confessions: Deprivations of liberty and miscarriages of justice in the age of psychological interrog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8(2), 429-296.
- Spranca, M., Minsk, E., & Baron, J. (1991). Omission and commission in judgment and cho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76-105.
- Strömwall, L. A., Hartwig, M., & Granhag, P. A. (2006). To act truthfully: Nonverbal behaviour and strategies during a police interrogation. *Psychology, Crime & Law*, 12(2), 207-219.
- van Charldorp, T. C. (2012). *From police interrogation to police record*. Phd thesis, Vrije University.
- Vrij, A., Edward, K., & Bull, R. (2001). Stereotypical verbal and nonverbal responses while deceiving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99-909.
- Vrij, A., & Mann, S. (2006).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n empirical test of its underlying processes. *Psychology, Crime & Law*, 12(4), 337-349.

한국심리학회지 : 법

- Vrij, A., Mann, S., & Fisher, R. P. (2006). Information-gathering vs accusatory interview style: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dents' experi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4), 589-599.
- Vrij, A., Mann, S. A., Fisher, R. P., Leal, S., Milne, R., & Bull, R. (2008). Increasing cognitive load to facilitate lie detection: the benefit of recalling an event in reverse order. *Law and human behavior*, 32(3), 253-265.
- Vrij, A., Semin, G. R., & Bull, R. (1996). Insight into behavior displayed during decep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4), 544-562.
- White, C. H., & Burgoon, J. K. (2001). Adaptation and communicative desig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7(1), 9-37.

1 차원고접수 : 2020. 09. 28.

심사통과접수 : 2020. 10. 26.

최종원고접수 : 2020. 11. 11.

The Effect of Investigator's Belief about Veracity of Suspect on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Hyoung Keun Lee

Korean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Eunkyung Jo

Dongguk University

Mi Sun Yi

Dongyang University

The Statement evidence is an important method of proof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Under certain conditions set by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paper records of interrogations are admissible in criminal courts. However, it is shown that distortions are ever-present in paper record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vestigator's belief about the veracity of a suspect on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Ninety police investigator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one of the three conditions('guilty belief', 'innocent belief', 'neutral belief'), and all the investigators were then asked to document a paper record while watching a prefilmed interrogation interview of the crime.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investigator's belief had significant effects on distortions. (2) All groups did more commissions than omissions. (3) matters subject to interrogation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distort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vestigator's belief, interrogation, distortion of paper record, commission, omission